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제11판)
추록

P 339 015 해설 대체 (2025. 7. 계엄법 개정 내용 반영)

해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엄법 제4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 ·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5항).

정답 ○